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12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 -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9누43346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
원고, 항소인	주식회사 A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장
제 1 심 판 결	[redacted]지방법원 2019. 4. 16. 선고 2018구합15675 판결
변 론 종 결	2019. 8. 13.
판 결 선 고	2019. 11. 1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피고가 2017. 12. 28. 원고에게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12-12

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「행정소송법」 제8조 제2항, 「민사소송법」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.

2016. 3. 3. 당시 시행되던 「지방세법」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은 '주택'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강승준

판사 고의영

판사 이원범